

제 1485 호
1990. 4. 21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고 건수
편집인: 공보관 유 천 수
전화: 731-6111~3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35-3337

시 보

차 례

● 조 례
제2604호 서울특별시환경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 3

● 고 시
제 108 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 8
제 109 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 9
제 110 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 11

● 공 고
제 221 호 표시허가취소공고 12
제 228 호 을지로2가구역제6지구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을위한공람공고 12

(이면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구 고 시

제10호	재건축사업계획승인(서대문)	13
제10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시행허가(강동)	13
제12호	도시계획시설(가락408부락근린공원)조성계획지적승인(송파)	14
제20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은평)	15

● 구 공 고

제23호	도시계획사업(방수설비,하수도)실시계획공람공고(용산)	16
제3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성북)	16
제3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성북)	17
제3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관악)	17
제5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은평)	18
제5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은평)	18
제57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은평)	18
제5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은평)	19
제59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은평)	19

● 사업소고시

제12호	하천계속점용및변경허가	20
제13호	하천의점용허가	20

● 사 령

조 례

◎서울특별시조례제2604호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1호의 자료조사원란중 6급상당란 다음에 7급 상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 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비 고
7급상당	· 연구조사서의 원고정리 · 자료조사, 수집	1.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로서 당해 분야에 상응하는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로서 당해 분야에 상응하는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별표1〕 제1호의 개발계장란의 임용자격란 제2호 및 지도사관의 6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3호중 “전전생활분야”를 각각 “생활체육분야”로 한다.

〔별표2〕 제1호의 지도사관의 7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4호중 “전전생활분야”를 “생

활체육분야”로 하고, 동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4년제 대학의 체육특기자 졸업자로서 선수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별표1〕 제1호 지도사관중 7급상당란 다음에 8급상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 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비 고
8급 상당	· 여가생활관련 프로그램보급 및 지도 · 체육교실 및 레저교실등의 운영	1. 전문대학이상의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사회체육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2.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로서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사회체육지도자자격증 소지자로서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4. 9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생활체육 분야 행정경력이 1년 6월 이상인 자 5.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로서 선수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별표1〕 제5호의 제목 “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를 “부녀청소년, 아동복지 및 직업훈련분야”로 하고, 동호중 부녀상담원란 앞

에 청소년 직업훈련원장란, 교무과장란, 지도과장란, 기획계장란, 교무계장란 및 지도계장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명(위) 및 업무구분	계 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비 고
청소년직업훈련원장	4급상당	· 청소년직업훈련원의 운영총괄 · 기술교육전반에 관한 종합분석·지도업무의 총괄	1.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이상인 자 2.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기능사 훈련과정의 직업훈련교사 1종 1급 면허 소지자	

직명(위) 및 업무구분	계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비고
			3.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종사경력이 있는 자	
교무과장	5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계획수립 및 시행 · 훈련생 성적관리 · 훈련장비 유지관리 · 기능 점정용사 지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급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3년이상인 자 2.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기능사 훈련과정의 직업훈련교사 1종 2급 또는 2종 2급 이상의 면허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기준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종사 경력이 있는 자 	
지도과장	5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운영 · 상담 및 생활지도 · 취업처의 개발 · 알선·사후관리 · 교양·체육·여가 선용의 지도 · 청소년 문화극장 운영 및 부대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4년제 대학의 사회사업학 또는 보건 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청소년 지도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종사경력이 있는 자 	
기획계장	6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원의 훈련적중, 취업정보 개발 · 직업훈련제도 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 행정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기능사 훈련과정의 직업훈련교사 1종 2급 이상 면허소지자 3.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기능사 훈련과정의 직업훈련교사면허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직명(위) 및 업무구분	계 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비고
교무계장	5급상당	·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훈련생 성적관리 · 교육훈련감독 · 기능검정응시 지도	1.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 행정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기능사훈련과정의 직업훈련교사 1종 2급이상 면허소지자 3.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기능사훈련과정의 직업훈련교사 면허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지도계장	6급상당	· 기숙사 운영 · 상담 및 생활지도 · 취업처의 개발·압선·사후관리 · 교양·체육·여가 선용의 지도	1.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 행정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4년제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p>[별표1] 제5호의 지도교사란 및 훈련교사란을 지도계장란(부녀상담원란 앞) 다음에 8급상당란을, 훈련교사란중 7급상당란 앞에 6급상당란을 각각 다음으로 하고, 지도교사란중 7급상당란 다음에 8급상당란을, 훈련교사란중 7급상당란 앞에 6급상당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직명(위) 및 업무구분	계 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비고
	8급상당	· 청소년교육 및 생활지도	1. 사회사업종사자 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여자 2.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여자	
	6급상당	· 해당직종 책임관리 · 교육훈련의 계획 및 실시	1.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기능사 훈련과정의 직업훈련교사 1종 2급이상 면허 소지자 2.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기능사 훈련과정의 직업훈련교사 면허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p>[별표1] 제5호의 직명(위) 및 업무구분란 중 "아동복지지도원"을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고, 동 아동복지지도원란의 6급상당란 의 임용자격란 제2호, 제3호 및 7급 상당란 의 임용자격란 제2호중 "아동복지지도원"을 각각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한다.</p>				

[별표1] 제6호 영양사관의 6급상당란 및 7급상당란의 각 직무내용란중 "입원 환자의 급식관리"를 각각 "급식관리"로 한다.
 [별표1]-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 표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교통방송분야

직명(위) 및 업무구분	계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비고
교통방송 본부장	2급또는 3급상당	· 방송업무의 전반적 운영 관리	1.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재직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2. 석사학위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4급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재직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3.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종사경력이 있는 자	
총무국장	4급상당	· 방송본부 행정관리 업무분야 총괄	1.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1년제 대학의 졸업자로서 공무원 재직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3.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종사경력이 있는 자	
업무과장	5급상당	· 광고방송편성 및 기획 · 광고물 제작, 계약 · 각급 사업 및 행사 의 개발·관리	1. 6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재직경력이 8년 이상인 자 2. 4년제 대학의 졸업자로서 공무원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종사경력이 있는 자	
업무담당 (계장)	6급상당	· 광고방송편성 및 기획 · 광고물 제작·계약 · 각종 사업 및 행사 의 개발·관리	1.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재직경력이 6년 이상인 자 2. 4년제 대학의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상응하는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상응하는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직명(위) 및 업무구분	계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비고
			4. 공무원 제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업무담당 요원	7급상당	· 광고료 및 시간 결정 · 광고주 관리 및 판매 · 각종 사업 및 행사 의 개발, 관리	1. 8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제직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로서 관련분 야에 상응하는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인 자 3. 공무원 제직경력이 8년 이상인 자 4.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로서 관련분 야에 상응하는 실무경력이 4년 이상 인 자	
	8급상당	· 광고료 및 시간결정 · 광고주 관리 및 판매 · 각종 사업 및 행사 의 개발, 관리	1. 공무원 제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전문대학 이상에서 관련학과를 이수 한 자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로서 관련분 야에 상응하는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인 자	
	9급상당	· 광고료 및 시간결정 · 광고주관리 및 판매 · 각종사업 및 행사 의 개발, 관리	1. 공무원 제직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로서 관련분 야에 상응하는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인 자	
교통정보 관리요원	7급상당	·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 교통상황의 접수, 통보 · 홍보자료의 작성,통보	1. 8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제직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공무원 제직경력이 8년 이상인 자로 서 교통업무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 상인 자	

직명(위) 및 업 무 구 분	계 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비고
	8급상당	·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 교통상황의 접수, 홍보 · 홍보자료의 작성, 홍보	1. 공무원 재직경력이 5년이상인 자 2. 공무원으로서 교통업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9급상당	·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 교통상황의 접수, 홍보 · 홍보자료의 작성, 홍보	1. 공무원 재직경력이 2년이상인 자 2. 공무원으로서 교통업무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부 칙
이 조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08호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고시

건설부 고시 제131호(76. 8. 21)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영동아파트 3지구(서초지구)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되 일반인은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1990. 4.
서울특별시 장

- 지구개발기본계획의 명칭 : 서울특별시 영동아파트3지구(서초지구) 개발기본계획
- 지구개발 대상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일대 (1,475,555㎡)
- 지구개발 계획의 변경개요
· 영동아파트 3지구(서초지구)1주구내 주택용지 1,462.6㎡를 주구중심(종교시설)으로 기본계획 변경 : 내역별칭
- 공람장소 및 방법
· 공람장소 : 주택국 주택기획과, 서초구청 주택과
· 공람방법 : 개별방문 열람

영동아파트3지구(서초지구) 기본계획 변경내역

가. 지구면적표

(단위 : ㎡)

합 계	3-1주구	3-2주구	3-3주구	3-4주구	비 고
1,475,555	264,275	548,223	246,916	416,141	변경없음

나. 지구이용 계획 변경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	%	㎡	%	
계	1,475,555	100	1,475,555	100	변경없음
지구 중심	15,225.04	1.03	15,225.04	1.03	-
주구 중심	44,844	3.04	46,306.6	3.14	1,462.6㎡ 증가
분구 중심	26,982.43	1.83	26,982.43	1.83	변경없음
주택용지	943,050.07	63.91	941,587.47	63.81	1,462.6㎡ 감소
학교용지	155,378.53	10.53	155,378.53	10.53	변경없음
공원용지	118,560	8.04	118,560	8.04	-
도로용지	171,514.95	11.62	171,514.93	11.62	-

다. 3-1주구 이용계획 조정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	%	㎡	%	
주구 면적	264,275	100	264,275	100	변경없음
주구 중심	4,132	1.6	5,594.6	2.2	1,462.6㎡ 증가 (제2주구 중심 신설)
분구 중심	1,667	0.6	1,667	0.6	변경없음
주택용지	155,545	58.9	154,082.4	58.3	1,462.6㎡ 감소
학교용지	33,302	12.6	33,302	12.6	변경없음
공원용지	24,413	9.2	24,413	9.2	-
도로용지	45,216	17.1	45,216	17.1	-

라. 3-1주구의 "2"주구 중심 건축계획

- 1) 주구 중심면적: 1,462.6㎡
- 2) 용 도: 종교시설
- 3) 층 수: 5층 이하
- 4) 건 폐 율: 50% 이하
- 5) 대지최소면적: 1,000㎡ 이상
- 6) 기 타: 녹지시설을 대지면적의 30% 이상 설치

일반인은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1990. 4. 20
서울특별시 장

○지구개발 기본계획의 명칭: 서울특별시 영동아파트 1지구(반포지구) 개발기본계획

○지구개발 대상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일대 (1,889,020㎡)

○지구개발계획의 변경개요
· 영동아파트 1지구(반포지구) 기본계획 중 건축물의 용도규제 계획변경: 내역별첨

○공람장소 및 방법
· 공람장소: 주택국 주택기획과, 서초구청 주택과
· 공람방법: 개별방문 열람

◎서울특별시 고시제109호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76. 8. 21)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영동아파트 1지구(반포지구)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니

영동아파트 제1지구(반포) 기본계획변경승인 내역		
5. 건축규제의 계획		
항 목	변 경 권	변 경 상 인
가. 용도규제 계획		
· 주택용지	생 탁	(추가) -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포함)
· 지구중심	생 탁	(추가) - 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에 한한다) -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포함) - 제조장(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 지구중심	생 탁	(추가) - 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에 한한다) -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포함) - 제조장(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 분구중심	생 탁	(추가) -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포함)
· 학교용지 등	생 탁	현행과 같음
나. 건축물 규제 계획	생 탁	현행과 같음
다. 건축물의 높이규제 계획	생 탁	현행과 같음
라. 세대밀도 규제계획	생 탁	현행과 같음
마. 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규제 계획	생 탁	삭 제
바. 녹지조성 계획	신 설	주택용지에 설치하는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포함)은 녹지시설을, 대지면적의 30% 이상 설치
사. 공동주택과의 이격 거리	신 설	지구 및 지구중심내외 제조장은 공동주택과의 거리를 70미터이상 이격 설치
6. 지구 및 지구중심의 건축계획		주택기회과 및 서초구청 주택과에 비치된 개발기본계획을 개별 방문 열람.
- 각 지구중심, 지구중심 및 분구중심 건축물의 개별용도 제한 내용은 주택국		함.

◎서울특별시고시제110호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고시

건설부 고시 제131호(75.8.21)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영동아파트 3지구(서초지구)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제2항및동법 시행령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니 일반인은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1990. 4. 20

서울특별시

- 지구개발 기본계획의 명칭 : 서울특별시 영동아파트 3지구(서초지구)개발기본계획
- 지구개발 대상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일대 (1,475,555㎡)
- 지구개발 계획의 변경개요
 - 영동아파트 3지구(서초지구)기본계획중 건축물의 용도규제 계획 변경 : 내역별첨
- 공람장소 및 방법
 - 공람장소 : 주택국 주택기획과, 서초구청 주택과
 - 공람방법 : 개별방문 열람

영동아파트 제3지구(서초) 기본계획 변경승인 내역

5. 건축 규제의 계획

항 목	변 경 전	변 경 승 인
가. 용도규제계획		
· 주택용지	생 락	(추가) -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포함)
· 지구중심	생 락	(추가) - 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에 한한다) -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포함) - 제조장(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법에 관한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 지구중심	생 락	(추가) - 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에 한한다)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 분구중심 · 학교용지등	생 락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포함) -제조장(아파트지구개발기본 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추가)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포함) 현행과 같음
나. 건축용 규제 계획	생 락	현행과 같음
다. 건축량의 높이규제 계획	생 락	현행과 같음
라. 세대밀도 규제계획	생 락	현행과 같음
마. 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량의 높이규제 계획	생 락	삭 제
바. 녹지조성 계획	신 설	주택용지에 설치하는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포함)은 녹지시설을 대지면적의 30%이상 설치
사. 공동주택과의 이격 거리	신 설	지구 및 지구중심내의 제조장은 공동주택과의 거리를 70미터이상 이격 설치

6. 지구 및 지구중심의 건축계획

-각 지구중심, 지구중심 및 분구중심 건축량의 개별용도 제한 내용은 주택구축계획과 및 초초구정 주택과에 비치된 개발기본계획을 개별 방문 열람.

공 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21호
표시허가 취소 공고

공업표준화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K.S표시허가 취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0. 4. 18.

서울특별시 장

- 업체명 : 건일빌드공업사
- 대표자 : 박 춘 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1동562-5

○규격번호 : KSB 6405

○규 격 명 :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종류·등급 : 온수용 방열기 엘브 20%

○취소사유 : 시정확인검사 불합격 및 자진 반납

○취소일자 : 90. 4. 18

●서울특별시 공고 제228호

을지로 2가구역 제6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시 고시 제923호(86.12.23)로 재개발사업시행 인가되고 동고시 제461호(89.10.18)로 변경인가된 을지로 2가구역 제6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주)기린개발 대표 손석호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변경 신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가 변경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1990. 4. 21.
 서울특별시

가. 변경내용

번호	구분	변경전	변경후
1	사업 시행자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주식회사 기림개발 대표이사 손석호	서울시 중구 수표동 27-1 태흥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병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주식회사 기림개발 대표이사 손석호
2	주변사무소소재지	서울시 중구 장교동1번지 (장교빌딩 2601호)	서울시 중구 수표동 27-1 (새한빌딩 301호)
3	규약	별첨 (생략)	

나. 변경사유: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 시행

구 고 시

●서대문구 고시 제10호
 재건축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4.

서 대 문 구 청 장

1. 사업명: 충정로동 개명아파트 재건축사업
2. 사업주체: 개명아파트 재건축 조합
조합장 유규상
3. 사업 시행위치: 서대문구 충정로동 185-15,19호
4. 대지면적: 3,042.75㎡
5. 사업규모: 아파트, 15층, 1동, 76세대

6. 사업시행기간: 1990.4.-1991.10.

●강동구 고시 제10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시행허가

1. 강동구 고시 제10호(90.4.12)로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시행허가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56, 산64, 산64-1, 산65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공원 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 4. 12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강동구 상일동 산56, 산64, 산64-1, 산65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명일근린공원 부분 조성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풀프런슌장: 4,400㎡(건물연면적 450㎡)

○정 구 장: 1,500㎡(" 80㎡)

○주 차 장 : 1,116㎡
 ○도 로 : 1,248.9㎡
 ○녹 지 : 21,860.1㎡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강
 동구 영일동 42번지 우성아파트 7동 701
 호 김호삼
 마. 사업시행기간 : 1990.4. - 91.6.30.

◎송파구고시제12호
 도시계획 시설(가락 408브릭 근린공원)

조성 계획 지적승인

1. 건설과 고시 제157(90.4.2)호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가락 408브릭 근
 름공원) 조성계획을 도시계획법제13조2항

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지적승인하였기. 같은법제13조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생활제
 육과, 도시정비과 문경1동에 각각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 4. 16

송 파 구 청 장

가. 도시계획 시설(가락 408브릭 근린공원)
 조성 계획 지적승인 조서 : 별 첨
 나. 조성계획 지적승인 도면 : 공원녹지과,
 생활체육과, 도시정비과, 문경1동에 비치
 도면과 같음.

*시설조서

시설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규모수량	시 설 면 적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송파구문경 2면지	24,015.9		37.44	37.44	
도로 및 광 장		소 계		2,440.75				
		도 로	전 지 역	1,882.25	17개소			
	1-1	광 장	전 지 역	487	1개소			
	1-2	광 장	전 지 역	71.5				
조정시설		소 계		40.5	1개소			
		파 고 타	전 지 역	40.5	1개소			
휴양시설		등 의 자			24EA			
		평 의 자			6EA			
운동시설		소 계		3,529.5				
	1	배드민턴장		1,763	6면			
	2	농 구 장		899	1면			
	3	배 구 장		279.5	1면			
	4	게이트볼장		374	1면			
	5-1	체력단련장		110				
	5-2	체력단련장		52				
	5-3	체력단련장		52				
관리시설		소 계		37.44		37.44	37.44	
		관리사무소(2층)		27.44	지상1층	37.44	37.44	조적조
		휴 지 통			13EA			
기타시설		녹지및기타		17,967.71				

*도로조사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개					1,882.25				
소로	3	1	3	7	21	진입로	20m도로	소 3-2	
		2	2	40	80	연결로	소 3-1	소 3-4	
		3	2	35	79	연결로	소 3-1	소 3-4	휴게공간 9㎡포함
		4	3.5	19.5	68.25	진입로	소 3-3	동경주공APT	
		5	2	22	44	연결로	소 3-4	소 3-7	
		6	2	22	53	연결로	소 3-4	소 3-7	휴게공간 9㎡포함
		7	2	26	130	진입로	20m도로	소 3-9	
		8	2	36.5	73	연결로	소 3-9	소3-11	
		9	2	33.5	67	"	소 3-7	소3-11	
		10	2	31	71	"	소 3-7	소3-11	휴게공간 9㎡포함
		11	5	42.5	212.5	진입로	20m도로	광장 1-1	
		12	2	185	451	연결로	광장 1-1	프라자APT	운동공간 81㎡포함
		13	1.5	172	258	산책로	광장 1-1	프라자APT	
		14	1.5	28	42	"	소 3-13	채력단원장	
		15	1.5	27	40.5	"	소 3-13	"	
		16	1.5	16	24	"	소 3-17	"	
		17	1.5	112	168	"	소 3-13	프라자APT	

●은평구 고시 제20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53호(89.7.21)로 시
 설결정되고 (서울)은평구 고시 제16호(89.
 7.28)로 지적 승인된 녹면동81-131간 도
 로확장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을 실시
 코자, (서울)은평구 공고 제23호(90.2.13)
 로 공람 공고 완료하고 도시계획법제25조
 및제26조, 동법시행령제6조, 서울특별시 조
 례 제2413호의 규정에 의거 본사업을 인가
 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4. 17.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은평구 녹면동 139의 14-
 131의 176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
 로) 녹면동 81-131간 도로확장 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도로확장 B=3-
 4→8^m L=140^m A=11.2a

라. 사업의 시행자: 은평구청장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90.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
 서: 별첨

사. 토지 및 건물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아. 보상계획

1) 보상시기: '90.4월부터

2) 감정평가 금액으로 계약제결 요구일로부터 2개월이내 협의 취득

· 보상지급방법

토 지 : 계약과 동시 보상금 전액지급
건 물 : 계약과 동시 70%지급 철거후 잔액지급

3) 협의 불응시 토지수용법제25조2항및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

구 공 고

●**용산구 공고 제23호**

도시계획사업(방수설비, 하수도) 실시계획 공람공고

1. 서울시 고시 제96호(90.4.3)로 결정고시 및 용산구 고시 제8호(90.4.10)로 지적 승인된 원로4가 147번지 및 보광동 71번지 일대에 우수배제 펌프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방수설비, 하수도)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2및동법시행령제2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 기간내 용산구청 하수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0. 4.

용 산 구 청 장

공 램 요 지

가. 사업시행지 : 심원우수배제펌프장-원로4가 147번지 일대

보광우수배제펌프장-보광동 7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도시계획사업(방수설비, 하수도)

명칭-심원 우수배제펌프장 개량공사

보광 우수배제펌프장 신설공사

다. 사업개요 : 펌프장건설 각1동, 하수관로-심원 : 512"

보광 : 156"

라. 사업 시행자 : 용산 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1991.6.30.

바. 수용할토지(건물)주소및 계획도면 : 생략사. 공람 장소 : 용산구청 하수과

아. 공람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기타 상세한 것은 용산구청 하수과로 문의(710-3415)

●**성북구 공고 제3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호(69.1.18)로 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동덕여대주변 도로확장 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코자 도시계획법제25조2의및동법시행령제27조의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공람장소 : 성북구청(토목과 및 건설관리과)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990. 4.

성 북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월곡동 51-30~24-11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동덕여대주변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폭 : 8", 연장 : 290"

4)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90.4.-'91.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백 : 별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8) 기타사항: 의견 및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공고제33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제105호(83.2.24)로 시설 결정되고, 제210호(83.4.12)로 지적고시된 정릉동 185-181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코자 도시계획법제25조의2및동법시행령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3. 판제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가. 공람공고: 성북구청(토목과 및 건설관리과)
 나.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990. 4.

성 북 구 청 장

- 1) 사업시행지: 정릉동 181-7~길음동 854-29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 정릉동 185-181도로확장공사
- 3) 사업의 규모: 폭: 6m, 연장: 190m
- 4) 사업시행자: 성북구청장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90.4-'91.12.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 관계인주소, 성명: 별첨
- 8) 기타사항: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공고제35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500호('89.11.2)호 및 관악구 고시 제114호('89.11.28)호로 도시계획사업(도로)결정 및 지적승인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66의66-산63의 89간의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25조의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27조의2항에 의거 14일간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고 관계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받아보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가. 공람기간: '90.4.19-'90.5.3(14일간)
 나.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정비과(880-3385)

1990. 4. 19

관 악 구 청 장

- 아 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66의66-산63의 89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 사업(도로)-(폭 8m, 연장 80m)
3. 시행자의 주소성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47-4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 2번출구
4.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 허가일-'91.2.1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명세-공람장소에 비치한 조서와 같음
2.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별첨 (생략)

●은평구공고제5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 1. 서울시 고시 제75호('90. 3. 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은평구 고시 제19호('90. 4. 12)로 지적승인된 갈현동 341-344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90. 4.

은 평 구 청 장

- 공 략 개 요 -

- 가. 사업 명 : 갈현동 341-344간 도로개설공사
- 나. 위 치 : 갈현동 342의1-362의 3간
- 다. 사업규모 : 도로확장 B=6m, L=73m (도로)
- 라. 사업의 시행자 : 은평구청장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90. 4 - '91. 12. 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은평구공고제5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 1. 서울시 고시 제75호('90. 3. 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되고 은평구 고시 제19호('90. 4. 12)로 지적승인된 용암동 365-397간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2

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90. 4.

은 평 구 청 장

- 공 략 개 요 -

- 가. 사업 명 : 용암동 365-397간 도로개설공사
- 나. 위 치 : 용암동 365의40-397의 264간
- 다. 사업규모 : 도로확장 B=6m, L=47m (도로)
- 라. 사업의 시행자 : 은평구청장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90. 4 - '91. 12. 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은평구공고제57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75호('90. 3. 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은평구 고시 제19호('90. 4. 12)로 지적승인된 대조동 84-88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며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90. 4.

은 평 구 청 장

- 공 랑 개 요 -

가. 사 업 명 : 대조동 84-88간 도로확장
공사

나. 위 치 : 대조동 88의 16-88의 93간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B=6m, L=86m

라. 사업의 시행자 : 은평구청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90. 5 - '92.
2. 28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조서 :
별첨

◎은평구공고제5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75호('90. 3. 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되고 (서울)은평구
고시 제19호('90. 4. 12)로 지적승인된 녹
번동 105-108구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인
가를 득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2의 규정
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
과에 비치하며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같음합니다.

1990. 4.

은 평 구 청 장

- 공 랑 개 요 -

가. 사 업 명 : 녹번동 105-108간 도로확
장공사

나. 위 치 : 녹번동 105의 1-108의 27간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B=6m, L=62m

라. 사업의 시행자 : 은평구청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90. 4 - '92.
2. 28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조서 :
별첨

◎은평구공고제59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75호('90. 3. 20)
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되고 서울
은평구 고시 제19호('90. 4. 12)로 지
적승인된 은평구 불광동 426-168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인 은평구 불광동
426의23-115의2간 도로에 대한 도시
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자 도시계획법 제25조 2의 규정에 의
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
과에 비치하며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같음합니다.

1990. 4. 17

은 평 구 청 장

- 공 랑 개 요 -

가. 공 사 명 : 불광동 426-168간 도로개
설공사

나. 사업의 시행지 : 은평구 불광동 426의
23-115의2간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라. 사업의 규모 : B=6m L=156m

마. 사업의 시행자 : 은평구청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90. 4 -
'91. 12.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조서 :
별첨

사업소고시

◎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12호
하천계속점용 및 변경허가

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0. 4. 14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허가 년월일	위 치	지 목	점용면적	점용 목적	점용기간	허가 를 받 은 자	
						주 소	성 명
'90. 4. 14	서울특별시 성동 구 자양동427번 지선(한강)	하천	709㎡ (당초 480㎡ 추가 229㎡)	유선장 설치	'90.4.14- '91.4.13	서울특별시 성동 구 성수2가 1동 610번지	아리랑 보트 (주) 대표이사 성연생

◎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13호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 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0. 4.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허가 년월일	위 치	지 목	점용 면적	점용 목적	점용기간	허가 를 받 은 자	
						주 소	성 명
'90 4.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지구앞 한강	하천	40㎡	왕십리-분당간 전철 시추조사	'90. 4. 17 - 5. 16	서울강남구 역 삼동 832-40	(주)유신설계 공단 대표이사 유정규

사 령

◎1990년 4월 15일자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10등급)

령 126호

성 명	발 행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향 순	지방사무보조원시보(조무) 기능직 10등급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총무과 근무를 명함.	신	규
임 훈 자	1호봉을 급함.	"	"
김 관 옥	지방기계기원시보(영사) 기능직 10등급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시민과 근무를 명함.	"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정수연	지방사무보조원시보(조무) 기능직 10등급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시립과 근무를 명함.	신	급
이경숙	지방사무보조원시보(조무) 기능직 10등급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운영과 근무를 명함.		

◎1990년 4월 18일자 지방별정직 9급상당 공무원 면직 명 제13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정순덕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경찰국 면허과	지방별정직9급상당
정순옥	"	"	"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 사령

◎1990년 4월 6일자 6급 기술직 공무원 면직 명 제43호

인비 번호	성명	제청			현직		
		부서	직위	직급	부서	직위	직급
1	김용기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은행수도사업소		지방기계기사

◎1990년 4월 14일자 - 6급 기술직 공무원 특별 임용

일련 번호	성명	임용사항			임용일자
		직급	호봉	부서	
1	김용서	지방기계기사	제 17 호	은행수도사업소	'90. 4. 14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 국외 여행 명령 통보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상수도사업본부	공업부기감	김홍석	파리,스톡홀름,동경	'90. 4. 22 - 5. 1 (10일간)	시비 (10,273불)	스웨덴 상수도처리 회의참석및 선전의 국경수장 시찰
"	지방화공기과	채희경	"	"	"	"

공무 국외 여행 명령 통보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기획관리실	지방서기관	신동우	동경	'90. 4. 22 - 4. 28 (7일간)	시비 (2,696불)	OECF차관 협약안 작성을 위한 최종 협의
지하철건설 본부	지방행정 사무관	류병관	"	"	"	"
공무 국외 여행 명령 통보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환경녹지국	이사관	조남호	미국	'90. 4. 19 - 4. 25 (7일간)	시비 (4,717불)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회의 참석하여 선진국의 환경대응 책을 조사연구
환경과	지방행정 사무관	여건영	"	"	"	"
공무 국외 여행 명령 통보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연료과	서기관	이재원	덴마크, 스웨덴, 독일	'90. 4. 17 - 4. 28 (12일간)	에너지관리 공단부담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제도 및 운영 실태조사
"	지방행정 사무관	이주영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	시비 (3,742불)	"
시민생활국 생활체육과	지방행정 주사	심정수	동경	'90. 5. 14 - 5. 17 (4일간)	서울시 체육회부담	서울-동경도간 우호 도시 스포츠교류 계 획에 따른 실무추진 협의
농축과	지방농업 기사	이규영	오사카	'90. 4. 20 - 4. 24 (5일간)	제일한국인 EXPO후원 회	화폐농가 EXPO '90 연수교육인솔
서울특별시장						